

한경훈 / 2월 / 기초 GS+ / 7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응시인원
535278	18.5	13	0	0	31.5	1	1.27%	5	79
535345	18	13.5	0	0	31.5	1	1.27%	5	
535464	18	13	0	0	31	3	3.80%	4	
535602	18	13	0	0	31	3	3.80%	4	
535321	17	13.5	0	0	30.5	5	6.33%	5	
535192	18	12	0	0	30	6	7.59%	4	
535316	16.5	13.5	0	0	30	6	7.59%	6	
535461	18	12	0	0	30	6	7.59%	4	
535527	17	13	0	0	30	6	7.59%	6	
535579	16.5	13.5	0	0	30	6	7.59%	6	
535840	19	11	0	0	30	6	7.59%	5	
536037	17	13	0	0	30	6	7.59%	4	
534545	18	11.5	0	0	29.5	13	16.46%	4	
535140	16.5	13	0	0	29.5	13	16.46%	5	
535347	17.5	12	0	0	29.5	13	16.46%	5	
535253	19	10	0	0	29	16	20.25%	4	
535221	16	12.5	0	0	28.5	17	21.52%	5	
535258	17.5	11	0	0	28.5	17	21.52%	5	
535412	16	12.5	0	0	28.5	17	21.52%	6	
535257	16	11.5	0	0	27.5	20	25.32%	5	
535513	17	10.5	0	0	27.5	20	25.32%	6	
536935	16	11.5	0	0	27.5	20	25.32%	5	
535215	16.5	10.5	0	0	27	23	29.11%	6	
535331	18	9	0	0	27	23	29.11%	5	
535596	15.5	11.5	0	0	27	23	29.11%	5	
535211	17.5	9	0	0	26.5	26	32.91%	4	
535217	17.5	9	0	0	26.5	26	32.91%	6	
535539	16	10.5	0	0	26.5	26	32.91%	6	
535882	14.5	12	0	0	26.5	26	32.91%	5	
534775	17.5	8.5	0	0	26	30	37.97%	5	
535462	16.5	9.5	0	0	26	30	37.97%	4	
535969	13	13	0	0	26	30	37.97%	5	
535368	16.5	9	0	0	25.5	33	41.77%	6	
535470	16.5	9	0	0	25.5	33	41.77%	5	
535647	15	10.5	0	0	25.5	33	41.77%	4	
536160	16.5	9	0	0	25.5	33	41.77%	5	
535459	18	7	0	0	25	37	46.84%	4	
535540	16	9	0	0	25	37	46.84%	5	
537128	16	9	0	0	25	37	46.84%	5	
534964	16.5	8	0	0	24.5	40	50.63%	6	
535322	17.5	7	0	0	24.5	40	50.63%	4	
535333	18	6.5	0	0	24.5	40	50.63%	4	
535617	15	9.5	0	0	24.5	40	50.63%	5	
536112	16.5	8	0	0	24.5	40	50.63%	6	
535465	15.5	8.5	0	0	24	45	56.96%	4	
536093	16.5	7.5	0	0	24	45	56.96%	5	
535656	14.5	9	0	0	23.5	47	59.49%	5	
535319	15	8	0	0	23	48	60.76%	4	
535329	14.5	8.5	0	0	23	48	60.76%	5	
534516	15	7	0	0	22	50	63.29%	5	
535968	13	9	0	0	22	50	63.29%	6	
536181	16	5.5	0	0	21.5	52	65.82%	5	
535104	12.5	9	0	0	21.5	52	65.82%	6	
535454	17	4	0	0	21	54	68.35%	5	
535568	12.5	8.5	0	0	21	54	68.35%	4	
535523	11	10	0	0	21	54	68.35%	4	
535255	14	6.5	0	0	20.5	57	72.15%	5	
535348	14.5	5.5	0	0	20	58	73.42%	6	
535973	12	8	0	0	20	58	73.42%	4	
536174	8.5	11.5	0	0	20	58	73.42%	5	
535310	16	3.5	0	0	19.5	61	77.22%	5	
536226	15.5	4	0	0	19.5	61	77.22%	5	

535244	11.5	7.5	0	0	19	63	79.75%	6
535651	16.5	2.5	0	0	19	63	79.75%	5
535218	16.5	2	0	0	18.5	65	82.28%	7
535293	11	7.5	0	0	18.5	65	82.28%	4
535505	18	0	0	0	18	67	84.81%	5
535528	17	0.5	0	0	17.5	68	86.08%	4
535311	16	1	0	0	17	69	87.34%	6
535183	16.5	0.1	0	0	16.6	70	88.61%	4
535256	16.5	0.1	0	0	16.6	70	88.61%	6
535994	9	7.5	0	0	16.5	72	91.14%	5
535223	16	0	0	0	16	73	92.41%	6
535742	16	0	0	0	16	73	92.41%	4
535325	15.5	0	0	0	15.5	75	94.94%	4
536108	15.5	0	0	0	15.5	75	94.94%	4
536571	9	6	0	0	15	77	97.47%	5
535239	14	0	0	0	14	78	98.73%	6
536141	11.5	2	0	0	13.5	79	100.00%	5

한경훈/2월/기초GS+/7회/1번	채점자
	이정은

1. 전반적인 총평

제34조 1항 각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설문 2와 같은 유형이 처음 접하실 때는 다소 헷갈리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① -이하여백-은 4문까지 전체 답안의 작성이 종결되어 그 이하가 여백임을 밝히는 문구입니다. 1, 2, 3문이 끝났을 때에는 -끝- 혹은 [끝]이라고만 써주시면 됩니다.

② 사안 포섭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매 설문마다 설문의 맨 마지막을 사안 혹은 결론 목차로 마무리해주셔야 합니다. 묻는바를 답하고 끝나는 식으로 답안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③ 설문 1은 대부분 비슷하게 써주셨습니다. 누락하신 문구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④ 설문 2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쓰신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9호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거나 11호 전단/후단 모두 인정된다고 하신 경우, 12호 후단에 대한 내용으로만 답안을 채우신 경우, 13호 판단을 누락하거나 조건부 적극 이라는 느낌으로 포섭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설문 2는 34조 1항 각 호에 관한 요건이 정확히 정리되어야지 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9호 요건만 포섭하시거나, 9호를 주 논점으로 파악하신 경우에는 정확한 복습이 필요하겠습니다.

⑤ 설문 2의 경우, 전체적인 목차 틀을 병렬식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1. 34조 1항 11호 전단 (1) 의의취지 (2) 관련판례 나열 (3) 사안 --- 하고 각자 포섭하고 5. 결론” 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가독성 좋은 답안이 됩니다. 강사님 답안을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⑥ 설문 2와 같은 문제에서는 주 논점을 강하게 써주셔야 합니다. 4호나 6호에 대해서는 줄 처리 정도로 하거나, 언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소결

설문 2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논점을 파악해서 결론을 정하고 강약 조절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다들 꼭 34조 1항 각호 요건을 복습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한경훈/2월/기초GS+/7회/2번</p>	<p>채점자</p>
	<p>이정은</p>
<p>1. 전반적인 총평</p> <p>11호 전단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문제였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① 설문 1은 11호 전단에서 가장 중요 판례라고 할 수 있는 판례를 타겟한 문제입니다. 중요 판례인바, [기업그룹이 타인에 해당될 수 있는지 / 선사용표장의 승계 계열사가 존재하는 경우]를 목차 나누어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안 포섭 방식에 대해 강사님 답안을 읽어보면서 그 흐름을 익혀두시면 좋습니다.</p> <p>② 설문 2는 11호 후단에 대해서만 포섭해도 감점하지는 않았지만, 13호까지 써주시면 만점을 드렸습니다.</p> <p>③ 제34조 1항 11호 전단과 후단에 대해서 서로 비교해서 개념 정리해주세요. 11호 전단/후단을 섞어서 쓰시거나, 전단으로 포섭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p> <p>3. 소결</p> <p>저번 주에 비해서는 2문에 대해서 짧게라도 써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쉽지 않더라도 1문은 36-37분에 맞춰서 풀고, 2문까지 풀어보는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문제 1>

6.5

I. 선출권 - 의결권을 행사하는 다양성.

1. 제 34조 (항 6호의 의의·취기)

(1) 의의: 제정하는 라인의 상업·명칭 등을 포함
-하는 상표를 등록자에게 부여된다.

(2) 취기: 제정하는 라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2. '아이돌 그룹'이 라인에 배당받는지 (2항)

(1) 상표권: 제정하는 '라인'에, 국내에 널리
-알려진 유희업, 연예업 등의 자연인 또는
'아이돌 그룹'과 같은 단체로 배당한다.

(2) 시안: 인기 아이돌 그룹인 'X'로 인격권의 주체
-가 될 수 있다.

3. '제정하는 라인'이 배당받는지 여부 (3항)

(1) 제정하는 판단기준 수립시점

"사용기간, 영업, 사용료, 사용량, 거버넌스,
거버넌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연예업

-도가 모두 그 기업체들과 관련된 기업체
에 널리 알려진 라인업계를 판단한다.

(2) 시안에 대하여



1) 세워 전. 공개한 음원이 늘어서 (위를 한
 -걸, 세워곡으로 바쳐가게된 음원 원위에서 (위를
 -하고 콘서트 200만 건을 기록한 걸.

2) 라트비아 수상 앨범과 일리야 가사들을 ~~고려하~~
 -이 개시한 걸,

3) 그리고 대령들까지 대한 수호가 여느 노래
 -하를 특이한 점을 고려하면,

4) 이를 예외) 후 24일 밤의 특이한 여는 X는
 일관성있게, 또는 1일도 안. 매니저가 없게서 (걸리
 알리지선 라틴이라고 할 수 있다.

4. 의견서의 라틴성 여부 (적극)

1) 알다 보면 사, X는 라틴성 라틴으로 인정
 -전혀 특이하며,

2) 제 34조 1항 6호를 보면, 변경된 것을 '판정'
 -해야 하므로, B 특이사항은 "X+2"로 이
 -점으로 분류한다.

3) 따라서, 의견서를 분류하는 것은 중요하다.

12

II. 설명 2.

1. X가 상품권내 가치는 양적로.

(1) 심미기질 - 저명상품의 형태

저명상품과 동일·유사한 양적 양태로, 이종·영양·이종상품과 관계된 거대계(이(이)별) 양적계(이)는 '저명한 상품'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2) 사안에 대하여: - X가 저명상품인지 (적극)

- 1) 음반의 표기인 X. 상품의 사용양상을 고려하고,
- 2) 각종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고 나아가 각종 상품·의 광고·보급으로 활동한 점을 고려하면,
- 3) 여러 방면의 사안 같이 X는 양적 저명한 양·의 표기이니 나아가 저명한 상품·를 표기 표기양을 수양하는 표기·이 된다.

2. 제 34조 1항 12호 후단 해당 여부 (적극)

(1) 의의·취지

「특허권을 기판할 열려가 있는 상품은 등록·적용·이 부양되는 아, 이는 특허권자의 신리나 권·양권을 침해하기 위함이다.

(2) 의의 - 양적기질 취지

주요 특허권자에게 적지은 특정한 양·를 양·인

크기만을 기를 요구하여, 나아가 상품권 종류 유사
범위 외이므로, '일일카드가 상품권을 다음날부터 인식
시킬 만한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적용 가능하
-라고 판단하여야 한다.

(3) 저명상품의 경우 (상품명) 취사시행.

즉, 일일상품이 저명한 경우이면, 일일카드의
거래일정에 의해서 '비유사한 상품'의 경우이므로 상품
권까지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

(4) 소결.

1) B의 저명상품인 '매일카드'는 비록 X가 사용권을
'일일카드'로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상품이지만,

2) 거래일정과 기타 거래조건상에서 의해서 X가,
즉 A사가 저명-판별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3) 다른 요건은 만족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통제에 내각한다.

3. 제 34조 1항 11호 전단

(1) 의의-특기)

저명한 상품권과 유사한 형태의 연일-카드를 일일카드
-형태가 없는 상품권. 숙의가 다른 다른 상품권과의
신용 단락을 의해서 등록이 배제된다.

(2) 판단요건을 취사시행

"인용상품의 크기·색상, 모양, 재료, 내용물
-기능의 유사성, 상품관련의 관련성 및 말성
성질, 사용목적화 성분과 유사성의 인식" 등을
중심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 사면에 대하여.

- 1) '동일·유사한 상품'은 11호 판단의 요건이 아니며
-그런 일 고려도 안 된 것이며,
- 2) B 출원상품은 실질적으로 A와 동일한 점을
-고려한다면,
- 3) 11호 판단에 준 비관한다.

4. 출원-제 34조 1항 13호 비관 (제33조)

상사기질이 다른 경우, 11호 판단에 비관하든
경우에 13호의 '수정특성'이 비관한다고 본다.

경우 유의사항!

18.5

<문제 2>

8.5

I. 실용-거절결정된 특허청.

1. 제 34조 1항 11호 관련.

(1) 의미: 제정된 하위법 규범과 관련된 산업
현상을 일컫는 수 많은 규범을 등록할 수 없다.

(2) 취지: 공·사익의 조화로서, 산업관계의 이익을
보호함과 나아가 독과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2. 제 34조 1항 11호 관련 판단요령 제시법

"인용규범의 크기-거절성, 창작성, 양 표정의 구성,
상표권 관련 거절성, 및 발명관련성, 관습과의 차이
다양화 정도 및 독과점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 기법의 거절사유 분리할 경우의 인용기준규칙 제시법

(i) 기법관련의 예외는 분리할 경우, 2종류로 분리할
사유에서, (ii) 기법의 영남에, 나아가 제정된 취지에
관련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독과점의 경우 2 인용
기준 규칙은 인정받으며, 2 인용을 인정하므로 법제
-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2종류에 3 기법관련의 양기
- 근과 화제라고 판단하였다.



4. 사안에 대하여

(1) 양 상표의 유사 여부 (가)

"레안계곡" 등 2 "계곡" 부분을 기성상표와 관련
에 식별력이 없으므로, 모두가 되는 "레안" 부분과
"레안"은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양 상표는 유사하다.

(2) 신용계곡 - 엠 레안 그룹

1) 甲·乙·丙 그룹은 즉각 기념물이나 상거래에 들어,
다수의 계열사를 통하여 각 사업분야를 장기간
선전에 올 아.

2) 수요자들의 인식을 고려하여 '엠 레안 그룹'의 '3
-레안그룹'의 신용을 실감하므로 등재나 해당 (불)
인정한다.

(3) 중상권 판단

(i) 22마는 상권을 연결하였으나, 또한 '엠 레안
-그룹'에 속하는 22들과 전제-관계로 독립한다.

(ii) 엠 레안 그룹에 속하는 '甲 그룹' 내의 계열사
-들을 물론이긴 하지만 기념물과 관련된 사업을
분양 중에 없다.

(iii) 실권자인 타인인 '엠 레안 그룹'과 22의
관계, 나아가 사업다각화 전로 들을 고려하면,
비당 기념물권을 하한다.



45

II. 선출 2.

1. 제 34조 1항 11호 후단.

- (1) 외화: 저명한 타인의 상표의 명칭·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없는 상표는 등록대상국인이 득한다.
- (2) 후지: 이는 위 저명한 상표에 한해란 영질감과 같은 이라기 같은 은화기 위너너이다.

2. 제 34조 1항 11호 후단 판단방법.

- (1) 외화 여부: (i) 저명한 타인의 상표와, (ii) 동일·유사한 상표를, (iii) 비유사 또는 유사한 이라기위 상표에 노출된다야 한다.
- (2) 심사기준: '유명한 이라기'인 상표일수록, '몰론' '희귀', '사생활' 등어 있다.

3. 선출-34조 1항 11호 후단 비당 여부 (제34조)

- (1) 상표의 권리 종류 범위 ('선출')
국내 기업들이나 ~~부동~~ 상외국에 있는 '일례' 2점이 '선출' 등'을' 득'할' 각'이라고'는' 논의' 안'되며, 고'로' 득'가'들의' 권리' 종류' 범위'는' 없다.
- (2) 유사판단 및 득여부
(i) 유명한 이라기인 상표에 출원되었으나,
(ii) 나아가 양 상표가 동일하다.



(3) 기술.

따라다. 3431형 1호 흑판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4. 1호-3431형 1호 13호 배양(저장)

(i) 심사기록이 따르면, 국내에서 특정의 플라스미드
인식된 라일리 샘플과 관련된 영성에 (ii)
특정한 이끼의 자원에 나열하는 이끼의 라절을
주는 것은 (iii) '특정한 플라스미드'에 의한다.

13

[문제 -1] A 인터 테이먼트

I. 서문 (1)

1. 목적 범위 및 범위

(1) 의미

지명된 타인의 상표 명칭 또는 상호·계명 또는 이들의 병칭을 포함하는 상품을 등록받을 수 없다.

(2) 취지 취례

지명된 타인의 상표권이나 호상권 등 지적권을 보호하는 사익적 취지이다.

2. '검류 X'의 타인인지 여부 (적극)

(1) 취례

현관 같은 지명어는 물론 뿐, 이차권을 포함한다

(2) 심사기준 - 유예인

지명된 연예인 이름, 연예인 그룹 명칭, 개리어체 등을 포함하는 상품은 본인이 해당 하는 것으로 본다.

(3) 사안의 경우

'검류 X'는 ^{본문항아 마찬가지로} 인적권이 있으므로 '출연인 B'와의 관계에서 타인이 해당한다.

3. 지명성 획득 여부 (적극)

(1) 지명성의 판단기준

타인 명칭 등이 지명화되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개리 범위, 지명성 획득 등을 고려하여 사리형명상 또는 지명상용의 개리사태에서 타인의 명칭 등이 널리



인식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사안의 경위.

오늘날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대량유통이
가능한 경우가 태부러 늘어나는 추세에 더불어 '경고문 X'의 보내는
위치를 기록하고 유정비디오는 하루 야기 2천수 2백만 건을 기록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고문 X'의 영향은
지정된 명칭에 해당한다.

4 결론 - 법 342 조 1항 6호의 개성유 타당성 검토 (재판)

의·출원상표인 'X+Q'는 일반의 지평상표인 'X'를 표상하는 상품과,
X의 권리자에게 통상적인 사정 또한 반비슷하므로 법 342 조 1항 6호의
개성유 유지는 타당하다.

II. 상표의

1. '경고문 X'의 명칭 'X' - 지평상표

(1) 지평상표 의미 해석

이름상표 및 이종업에 걸친 수직사 레이어가 특히 출처로 인식되는 용어; 출처 뿐 아니라
이 명칭수제를 표시하는 각종 갖게 된 상품들 말한다.

(2) 사안의 경위.

최근 대다수가 양수 있는 상표의 하표 'P', 다른의 방음 측면 통한 높은 인식도
현상, 경우무한 인기 등 증강하여 볼 때 '경고문 X'는 내지배한 많은 대량
수요자들은 ^{음원·방음대도} 다양한 상품에서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보아 지정된 상표에 해당한다.



2 법 342 항 9권

(1) 의미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 널리 인정된 상품이나 등일. 유사한 상품으로
등일. 유사 상품이 사외는 상품을 득받을 수 없다.

(2) 취지 취제

취지의 인. 품을 방지하기, 주지상품 사용과의 이익을 보전한다.

(3) 사안

'킬로그램'은 제지상품이 해당하고, B출원상품은 이와 동일한 상품이나
킬로그램의 사용상품인 ^{반대} 상품인 '명지'를 제지상품으로 하므로
법 342 항 9권의 제지사항이 해당하지 않는다.

3. 법 342 항 11권 제2항

(1) 의미. 취지

제지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영리가 있는 상품은 득받을 수 없는데,
이른 일반수요자에게 취지의 인. 품 영리가 생길 것을 방지하기 공익적
취지의 취지이다.

(2) 혼동 일으킬 영리의 판단 기준 취제

타인 사용상품의 제지 정도, 양 상품의 각 개성, 상품 또는 영리의 유사성 및 영리
신사용상품 형태의 사외다각화, 수요층 겹침정도 등 배려. 종합하여 판단한다.

(3) 사안의 경우

'킬로그램'은 용. 반용 외에도 의류, 약제사기 등 다양한 사외에 관습이
사용되었고, 국민 대다수가 알 수 있는 등 매우 제지하여, 'B출원상품'은

이러한 통상의 모든 것이 동일하며, 상용 또는 유사하다. 따라서, 양 상표의 인·혼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 34조 1항 11호 전단의 기재유가 있다.

4. 법 34조 1항 12호 후단.

(1) 차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2) 취지

기존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상의 출회권을 인식된 상표의 출회 후에 생긴 권방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고 여기에는 신의를 보전한다.

(3) 제사용 상표가 제명상을 획득한 경우 취소제

제명상을 사용한 상품·서비스를 별 아니라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도 제명상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 여기서 출회 후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고 기만 염려가 있다.

(4) 사안의 경우

'경로 X'는 제명상을 획득하였으므로 뿐만 아니라 상표가 아닌 '경로'에 사용되더라도 ^{출회} 인·혼동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B 출회상표'는 법 34조 1항 12호 후단의 기재유가 있다.

5. 결론

B의 출회상표 'X'는 법 34조 1항 11호 전단, 12호 후단의 기재유가 있다.

기재유가 (18) [결]

[문제-2] "태광"

I. 서문 (1)

1. 지출 34조 상 11년 정당 이행 취지

제명상동과 흔들 가함 있는 상동은 응답을 수 없는 이 일반 상동 이 인·출을 방지하는 공익 재정이다.

2. 타인인지 여부 (대극)

(1) 기업그룹의 타인 여부, 취사제

선사용권장의 권리는 개인, 개별기업 뿐 아니라 그룹의 집합체인 사회자 실체도 될 수 있다.

(2) 선사용권장 등에 제명사 권능의 경우 취사제

경제적·조직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명사를 이루는 기업그룹이 분리된 경우 선사용권장을 채택·응용·사용하게 함에 있어 일반 상동과 사이에 그 선사용권장이 인체된 신용의 취사로 인식되고 선사용권장을 능가하였다고 인정하는 제명사들을 권리로 보아야 한다.

(3) 사안의 경우

구 태광그룹은 제명한 표창이며, 4그룹인 태광산업, 2그룹인 태광에너지, 3그룹인 태광유통은 각각 상당한 자산규모로 국내 상위 기업이 해당하며, 모두의 제명사들 통해 "태광"을 계속사용하여 병 태광그룹을 이루고 있는 바 선사용권장 "태광"의 권리이다. 반면, 22사는 계열별인 선 상을 변경하여, 2023년부터 22그룹과 제명사 권능으로 이루는 관계가 없으므로 응답 재정인 2023년 6월 22일 선사용권장의 권리인 '병 태광'과의 관계에서 타인이 해당한다.



3. ~~특정~~ 특허 여부 (제3조)

(1) 판단기준 ~~위~~ 사례

특인 심사용 표준의 제1항 제2, 3항의 각 구, 상용·영업의 유사성·명칭상
비사용상품권리의 사업대상, 수요층의 중복 정도 등을 비교·판정하여
판정한다.

(2) 사안의 경우

범 태광그룹의 개별그룹은 사업다각화를 통해 각 사업분야에서
각종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의 대표적 기업으로 매우
거대하다. 그중의 주요 계열사인 G사의 정장은 "태광"으로
G사의 "태광지주"는 태광을 포함하고 있으며, M그룹의 속하는
계열사는 공표상 ^{개별}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G사의 지주사체인
'공표상 개별기업'과 유사하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G사의
"태광지주"는 범 태광그룹의 "태광"과 혼동여가 있는 상등이 해당한다

4. 경쟁경쟁 타당성 검토

G사의 "태광지주"라는 출원상품은 ^{관련} 심사용 표준의 권리자인 "범 태광그룹"과
타인이 해당하여, 혼동여가 있는 상등이 해당하므로 ~~법 34조~~
상 11는 선안을 이유로 한 해당 경쟁경쟁은 ~~타당하다~~

~~II. (제12)~~

~~1. 법 34조 1항 11는 후단~~

II. (문 2)

1. 법 34조 항 1호 후단

4.5

(1) 의미

저명상품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품에 등록 받을 수 없다.

(2) 취지 취제

저명상품이 한겨울 강북출판사나 팬오징어 등의 재산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익적 취지의 규정이다.

(3) 식별력 손상 염려 취제

타인의 저명상품과 가리는 특정한 출처만의 단일한 연관 관계, 즉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상실할 염려를 말한다.

(4) 명성 훼손 = 유사 기준

비록 좋은 이미지나 가치를 가진 저명상품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상품이나 영명이 사용함으로써 그 상품의 좋은 이미지나 가치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사안의 경우

'빙 레앙콤'과 유사한 관계가 없는 J이 타인의 저명상사용권자인 '레앙'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영명인 '도보빙 은영영'에 상표등록 출원을 한 경우, 법 34조 항 1호 후단의 가정이유에 해당한다.

[문제-1]

I. 설문(1)

1. 법 34조 1항 6호의 의미. 취지

지명한 타인의 성명 등을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은 지명한 타인의 성명권, 초상권을 비롯한 인격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2. '타인'에 2중가수의 명칭포함 여부

심사기준 상 지명한 연예인 이름, 지명한 연예인 2중의 명칭, 스포츠선수이름, 국내외 유명인사의 약칭 또는 캐릭터 등 포함하는 경우 인격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34조 1항 6호의 '타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지명한 명칭 등인지 여부

(1) 지명성의 판단기준 ④내세

해당 성명, 명칭 등의 사용기간, 방법, 사용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거래실정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또는 자정상품의 거래사례에서 널리 인식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지명성을 판단한다.

(2) 사안의 경우

① B의 출원상품에는 A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인기 걸그룹의 명칭인 'X'가 포함되어 있다.

② 걸그룹 X의 음원은 공개된지 4일만에 음원 순위 1위에 올랐고, X의 뮤직비디오 역시 공개 하루만에 2백만 건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걸그룹 X는 2022년에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으며 인터넷 뉴스에서도 X와 관련된 기사나 다수 게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오늘날에는 대중 음악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는 기재실정이 있다.

③ 걸그룹 X가 데뷔하고 2 명칭을 사용한 기간이 다소 짧음에도 불구하고, X의 명칭은 적어도 B 출원의 지정상품인 립스틱, 메니큐어의 거래처에서 널리 인식되었다고 판단된다.

4. 소결

① 걸그룹 명칭은 법 34조 1항 6호의 '타인'에 해당한다.

② 걸그룹 X는 지명성이 인정되고, B출원상품은 X를 포함한다.

③ 따라서, B출원은 법 34조 1항 6호의 기각이유가 있어 심사관의 기각이유통지는 타당하다.

상호 2

9.4

II. ~~문제~~ (2)

1. ~~법~~ 34조 1항 12호 후단의 의미, 취지

수표자 기안 열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이 불가하다. 이는 수표자의 출처 혼동 방지나 신뢰 보호의 취지이다.

2. 수표자 기안 열려의 성립요건 사례

① 출처인 이외의 타인의 상표가 ② 국내에서 특정인의 출처로 인식되는 정도 이상의 인지도를 가지고, ③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며 ④ 상표는 동일, 유사 또는 선사용 상표의 권리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인입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 34조 1항 12호의 수표자 기안 열려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국내에서 특정인의 출처로 인식되었는지 여부

(1) 특정인의 출처로 인식되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사례

~~상~~ ~~상표~~의 ~~외관~~, ~~호칭~~, ~~관행~~을 ~~전체적~~, ~~객관적~~, ~~아주적~~으로 ~~판정~~하여 ~~일반~~수표자의 ~~직관적~~ 인식에 ~~비추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사용~~될 ~~경우~~ 출처인·~~동등~~의 열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용기간, 방법, 태양, 이용범위, 거래상징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 정도 인식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안의 경우

① A는 음반을 지속적으로 제작하면서 걸그룹 X의 명칭과 동일한 상품을 음반에 포함하여 발간하고, 특히 데뷔곡은 국민 대다수가 알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성공하였다. 걸그룹 X는 다수의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였고, 음악 공연, 방송 출연 활동에서 높은 인지도를 쌓은 사실이 인정된다.

② 이러한 제반 사정과 대중음악에 대한 수요의 빠른 확산 속세 등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걸그룹 X의 명칭은 특정인의 속칭으로 인식되는 정도를 넘어서 지명성이 인정된다.

4. 상품의 동일·유사여부

걸그룹 X의 명칭과 B가 출원한 상품은 'X'로, 동일하다.

5. 상품범위 해당 여부

(1) 선사용상품이 지명한 경우 쉐어제

선사용상품이 지명하다면 지명상품의 사용상품과 이종 상품이라도 지명상품 사용과 많은 기타 특유한 관계에 있는 자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속칭 혼동으로 인한 수요자기만의 염려가 있다.

(2) 사안의 경우

① 권고그룹 X는 다수의 방송출연 및 광고모델 활동을 통해 쌓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의류, 악세서리 등 다양한 상품을 홍보하였으며 전무후무한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

② 권고그룹 X의 명칭은 주로 음반업 등에 사용되었으나, 그와 이종상품인 '편제코트'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X의 명칭의 유명성과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제명상품사용자 또는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자의 사용으로 오인될 염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소결

B출원상품명은 法 34조 1항 12호 후단의 기절이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6.5

<다음장 계속>

편지판서 유두머리 ~



<문제-2>

I. 서문(1)

1. 법 34조 1항 11호 전단의 의미, 특징

타인의 지명상표나 활동영역이 있는 상표는 등록 불가하다. 이는 일반 수요자의 출처혼동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다.

2. 타인인지 여부

(1) 기판그룹도 타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선사용 상표의 권리자는 개인이나 개별기업, 나아가 그들의 ~~자~~ 집합체인 사원적 실체도 될 수 있다.

(2) 선사용표장을 승계한 계열사가 존재하는 경우 사례

경제적, 조직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던 계열사들로

구성된 기판그룹이 분리되는 경우, 선사용표장을

채택, 등록, 사용하는 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수요자 사이에 표장에 한해된 신용의 귀속주체가

인정되며, 선사용표장을 승계하였다고 인정되는 계열사가

존재한다면 해당 계열사들이 선사용표장의 권리자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사안의 경우

① '범 태광 그룹'은 기판 그룹명이지만 하나의 사원적

실체로 인정됨으로 권리자가 될 수 있다.

- ② 사안에서 甲, 乙, 丙은 그 개별그룹별로 자산규모가 상당하여 국내 기업순위에서 각각 상위권에 들며, 각자의 상표로 '태양'을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이 세 주체가 선사용표장을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 ③ 또한, 乙는 구 태양그룹이 계열분리 이전에 상해를 변경하고 2023년 초부터는 乙그룹과 경제적, 조직적으로 아무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 ④ 따라서, 乙는 구 태양그룹과의 관계 ~~변화~~는 '타인에 해당한다'.

3.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여부

(1) 혼동을 일으킬 염려 판단기준 사례

지명성, 상표의 각 구성, 상품 또는 명칭의 유사성, 밀접성, 사업다각화 정도, 주요자송의 중복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안의 경우

'태양'은 2020년까지 국내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지명한 표장이며, 각 계열사의 자산규모가 상당하고 사업다각화를 통해 각 사업분야를 선진화하여 왔으며 다수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4. 소결

① Z2 회사의 '태양' 상품은 타인의 지명상품과
권중 열려가 있는 상품에 해당하여 법 342 ①항
11호 후단의 기적이유가 있다.

② 따라서, 심사관의 기적이유통지 및 기적결정은
부당하다.

II. 문제(2)

45

1. 법 342 1항 11호 후단

(1) 법 342 1항 11호 후단의 의의. 취지

지명상품을 희석화하는 상품은 등록불가하다. 이는 지명
상품에 한세린 근접흡인력이나 판매력 등의 재산적 가치
보전에 목적을 두고 있다.

(2) 영성 손상. 영려의 의미 (심사기준)

좋은 이미지, 가치를 가진 지명상품이 부정적 의미를 가진
상품 또는 영령에 사용되어 좋은 이미지,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의미한다.

(3) 사안의 경우

좋은 이미지를 가진 '태양'을 타인인 J이 부정적이고
불법적인 이미지의 '도박장 운영업'에 사용하는 것은
'태양'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법 342 1항 11호
후단의 기적이유가 있다.

2. 법 34조 1항 13호

(1) 법 34조 1항 13호 의미. 수치

부정한 목적의 출원은 등록불가하다. 상대방상상품의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의 상품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2) 사안의 경우

지명상품인 '태양'과 동일·유사하여 지명상품의 허위목적의 출원은 법 34조 1항 13호의 거절이유가 있다.

3. 소결

丁의 출원은 법 34조 1항 11호 및 13호의 거절이유가 있어 등록불가하다.

사안판결
결론

17.5